

POLICY iSSUE REPORT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진

홍근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1. 연구 배경	04
	2. 주요 연구내용	06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6
II	충청북도 재정여건 분석	
	1. 일반 현황	07
	2. 재정 현황	12
III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요	
	1.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	18
	2.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21
IV	충청북도 보통교부세 현황 분석	
	1. 충청북도 분청 현황	31
	2. 충청북도 시군 현황	42
V	충청북도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1. 기본방향	62
	2.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64
	참고문헌	82



서론

1. 연구 배경

의존재원 중심의 충청북도 재정여건

-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의 재정여건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충청북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5.5%이며, 전체 도 평균인 33.3%보다 낮은 수준임
 - 충청북도 소재 시군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8.3%이며, 전체 도 지역 평균인 30.8%보다 낮은 수준임
 -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의 재정 규모는 8개 도 지역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약 15.7조 원)
-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은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 합계는 14조 2,823억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3조 2,221억 원(22.6%) 수준임
 - 반면에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의 의존재원은 9조 9,440억 원(69.6%)으로 나타났음
 - 특히 보조금(44.8%)과 지방교부세(22.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모색 필요

-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기는 하지만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서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임
 -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2021년 당초예산 기준 보통교부세 비중은 일반회계의 13.1%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의 지방교부세 비중은 일반회계의 22.7%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 지방교부세 규모 및 산정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2020년부터 당초예산 기준 보통교부세 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세, 소득세 등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하였음¹⁾
 - 2021년 시도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전년대비 1,292억 원(-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에도 2021년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6,7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억 원(-3.5%) 감소하였으며, 17개 시도 평균보다 보통교부세 감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충청북도의 안정적인 재정운동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의 규모 및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²⁾
 - 충청북도 본청과 일부 시군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
 - 이로 인해 보통교부세 규모 및 산정방식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

1) 당초예산 기준 2021년 보통교부세는 2020년 대비 감소했지만, 추경 및 정산분을 반영된 2021년 보통교부세 총액은 5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4조 원(11.9%) 증가하였음. 다만, 추경 및 정산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액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기존 당초예산 기준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기준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음

2)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경기회복 등에 따라 기존 최고 수준을 초과하는 규모로 회복하는 상황임

-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의 보통교부세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 보통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보통교부세는 매년 산정방식을 개선 해오고 있으나, 지방행정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 따라서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충청북도만의 산정수요를 발굴하고, 충청북도의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충청북도의 재정여건 및 재정특성을 분석함
- 충청북도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를 비교·분석함
- 보통교부세 현황 및 감소 원인을 분석하여 행정적·법률적 제도개선 및 보통교부세 산정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함
- 기초수요 측정항목, 보정수요 등을 분석하여 충청북도에 유리한 재정수요를 발굴함
- 세출 및 세입의 자체노력도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충청북도의 보통교부세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2022년 이후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건의 자료로 활용함

II

충청북도 재정여건 분석

1. 일반 현황

- 충청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1,592천 명에서 2020년 1,601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14%이며, 전국 평균인 0.06% 보다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 간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세종, 경기, 제주, 충남 등 5개 시도임

• 표 2-1 | 주민등록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서울	9,931	9,857	9,766	9,729	9,668	-0.67
부산	3,499	3,471	3,441	3,414	3,392	-0.77
대구	2,485	2,475	2,462	2,438	2,418	-0.67
인천	2,943	2,949	2,955	2,957	2,943	0.00
광주	1,469	1,464	1,459	1,456	1,450	-0.33
대전	1,514	1,502	1,490	1,475	1,464	-0.84
울산	1,172	1,165	1,156	1,148	1,136	-0.78
세종	243	280	314	341	356	10.00
경기	12,717	12,874	13,077	13,240	13,427	1.37
강원	1,551	1,550	1,543	1,542	1,543	-0.13
충북	1,592	1,594	1,599	1,600	1,601	0.14
충남	2,097	2,117	2,126	2,124	2,121	0.29
전북	1,865	1,855	1,837	1,819	1,804	-0.82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전남	1,904	1,896	1,883	1,869	1,852	-0.69
경북	2,700	2,692	2,677	2,666	2,639	-0.57
경남	3,374	3,380	3,374	3,363	3,340	-0.25
제주	642	657	667	671	675	1.26
전국	51,698	51,778	51,826	51,852	51,829	0.06

주 : 주민등록상 인구는 매년 12월 말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충청북도의 유소년인구는 2016년 215천 명에서 2020년 196천 명으로 약 19천 명 감소하였음
 - 충청북도 유소년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20%로 전국 평균인 -2.28%와 비슷한 수준임
 - 최근 5년 동안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유소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표 2-2 | 유소년인구(14세 이하)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서울	1,157	1,119	1,071	1,033	995	-3.69
부산	402	392	382	372	363	-2.51
대구	321	314	304	295	285	-2.95
인천	404	395	385	375	363	-2.61
광주	220	214	207	201	195	-2.97
대전	218	210	201	192	184	-4.05
울산	171	168	163	159	154	-2.55
세종	50	58	65	70	72	9.62
경기	1,886	1,868	1,854	1,828	1,807	-1.06
강원	190	184	179	174	170	-2.71
충북	215	210	206	201	196	-2.20
충남	295	293	289	281	274	-1.83
전북	245	237	228	220	212	-3.59
전남	239	233	226	218	212	-2.9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경북	333	326	316	308	299	-2.69
경남	473	466	455	443	430	-2.36
제주	98	99	98	97	96	-0.60
전국	6,917	6,786	6,629	6,467	6,307	-2.2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충청북도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1,136천 명에서 2020년 1,116천 명으로 약 20천 명 감소하였음
 - 충청북도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44%로 전국 평균인 -0.51%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 동안 세종, 경기, 제주의 생산가능인구는 증가한 반면, 나머지 14개 시도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음

• 표 2-3 |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서울	7,478	7,378	7,285	7,217	7,112	-1.25
부산	2,560	2,513	2,470	2,422	2,371	-1.90
대구	1,835	1,814	1,795	1,764	1,733	-1.41
인천	2,215	2,209	2,207	2,197	2,168	-0.53
광주	1,077	1,069	1,065	1,060	1,050	-0.64
대전	1,125	1,112	1,101	1,084	1,069	-1.28
울산	892	880	868	856	838	-1.55
세종	169	195	220	239	249	10.17
경기	9,456	9,538	9,671	9,760	9,845	1.01
강원	1,094	1,086	1,075	1,064	1,053	-0.97
충북	1,136	1,132	1,132	1,126	1,116	-0.44
충남	1,452	1,461	1,465	1,456	1,442	-0.17
전북	1,278	1,266	1,250	1,229	1,206	-1.45
전남	1,265	1,255	1,244	1,228	1,203	-1.25
경북	1,875	1,853	1,831	1,808	1,767	-1.47
경남	2,421	2,410	2,396	2,372	2,330	-0.95
제주	454	465	473	474	473	1.00
전국	37,782	37,636	37,548	37,356	37,025	-0.51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충청북도의 노인인구는 2016년 241천 명에서 2020년 288천 명으로 약 47천 명 증가 하였음
 - 충청북도 노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55%로 전국 평균인 4.98%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 유소년인구 규모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 기준 유소년인구 비율은 12.24%로 전국 평균인 12.1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생산가능인구 규모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69.71%로 전국 평균인 71.44% 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노인인구 규모와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17.99%로 전국 평균인 16.39%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표 2-4 | 노인인구(65세 이상)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서울	1,296	1,360	1,410	1,479	1,561	4.77
부산	536	566	590	620	658	5.25
대구	329	347	363	379	400	5.05
인천	324	345	363	385	411	6.14
광주	173	181	187	195	206	4.48
대전	172	181	189	199	211	5.28
울산	109	117	124	133	143	7.15
세종	24	27	29	32	35	9.57
경기	1,374	1,468	1,552	1,651	1,775	6.61
강원	266	280	289	303	320	4.69
충북	241	252	262	273	288	4.55
충남	350	363	373	387	405	3.72
전북	341	351	358	371	386	3.15
전남	399	408	413	423	436	2.24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경북	492	513	529	549	574	3.89
경남	480	504	523	548	580	4.84
제주	89	93	96	100	106	4.45
전국	6,995	7,356	7,650	8,027	8,495	4.9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그리고 충청북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6년 0.79에서 2020년 0.62로 0.17 감소하였음
- 2020년 기준으로 충청북도는 지방소멸위험 주의 단계이지만,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표 2-5 |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1.18	1.11	1.07	1.01	0.95
부산	0.84	0.78	0.74	0.68	0.63
대구	0.96	0.89	0.85	0.78	0.73
인천	1.27	1.19	1.12	1.04	0.94
광주	1.17	1.10	1.05	0.99	0.93
대전	1.22	1.14	1.08	0.99	0.92
울산	1.41	1.29	1.18	1.06	0.94
세종	1.51	1.56	1.60	1.55	1.43
경기	1.29	1.20	1.15	1.08	1.00
강원	0.64	0.60	0.57	0.53	0.49
충북	0.79	0.75	0.72	0.67	0.62
충남	0.71	0.69	0.66	0.62	0.58
전북	0.62	0.59	0.56	0.53	0.49
전남	0.50	0.48	0.46	0.44	0.41
경북	0.60	0.57	0.53	0.50	0.45
경남	0.84	0.79	0.74	0.69	0.62
제주	0.88	0.86	0.85	0.80	0.75

주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 미만이면 소멸위험 보통, 0.5~1.0 미만이면 주의 단계, 0.2~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 단계,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을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 재정 현황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충청북도(광역+기초)의 재정규모는 15조 6,511억 원으로 도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의 평균 재정규모는 30조 5,675억 원이며, 강원외의 경우에도 19조 7,889억 원으로 충청북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가 79조 8,672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30조 6,131억 원)과 경남(30조 414억 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재정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의 81.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12조 6,768억 원(81.0%), 공기업 특별회계 6,515억 원(4.2%), 기타 특별회계 9,570억 원(6.1%), 기금 1조 3,687억 원(8.7%)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부터 기금까지 충청북도는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표 2-6 | 재정 규모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충북	15,651,077	12,673,847	651,475	957,007	1,368,749
경기	79,867,186	58,998,591	5,679,557	6,061,610	9,127,428
강원	19,788,901	15,637,212	798,744	1,335,070	2,017,876
충남	21,859,857	17,728,872	1,010,791	1,315,319	1,804,875
전북	21,366,755	18,139,882	713,467	1,213,407	1,299,999
전남	25,352,120	20,971,745	632,173	1,446,631	2,301,571
경북	30,613,065	24,931,098	1,158,113	2,166,788	2,357,065
경남	30,041,413	24,162,379	1,232,809	2,445,667	2,200,558
도 평균	30,567,547	24,155,453	1,484,641	2,117,687	2,809,765

주 1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주 2 : 시도+시군구 금액 기준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 충청북도(광역+기초)의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은 14조 2,823억 원으로 다른 도 지역에 비해 가장 작은 수준임
 -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의 평균 총 세입은 27조 1,590억 원이며, 경기도가 70조 7,398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 전남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
- 충청북도(광역+기초)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2조 5,023억 원, 세외수입 7,198억 원, 지방교부세 3조 2,485억 원, 조정교부금 등 2,990억 원, 보조금 6조 3,965억 원, 지방채 25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 913억 원으로 구성됨
 - 보조금이 총 세입에서 44.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교부세(22.7%)와 지방세 수입(17.5%) 등의 순서임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비중이 69.6%로 높은 반면에,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22.6% 수준임

• 표 2-7 | 일반회계 세입 현황 •

(단위: 억 원)

구분	충북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142,823	707,398	177,710	200,550	200,668	230,505	282,560	230,505
지방세수입	25,023	233,891	24,478	39,828	27,171	31,925	41,966	31,925
세외수입	7,198	60,021	9,406	10,770	9,125	9,177	12,942	9,177
지방교부세	32,485	41,628	50,504	41,979	48,392	63,811	71,946	63,811
조정교부금등	2,990	32,715	2,428	4,032	2,993	2,453	3,683	2,453
보조금	63,965	248,669	72,182	84,726	97,127	104,936	124,275	104,936
지방채	250	2,284	2,844	2,639	1,515	1,000	2,835	1,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13	88,189	15,870	16,576	14,345	17,203	24,914	17,203

주 1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주 2 : 시도+시군구 금액 기준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충청북도(광역+기초)의 지방세수입은 2조 5,023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563천 원임
 -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의 평균 지방세수입은 6조 29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695천 원임
- 지방세수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조 3,891억 원)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남(5조 5,953억 원)과 경북(4조 1,966억 원) 등의 순서임
 - 지방세수입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2조 4,478억 원)이며,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2조 5,023억 원)와 전북(2조 7,171억 원) 등의 순서임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1,878천 원)이며, 그 다음으로 경기(1,742천 원)와 전남(1,590천 원) 등의 순서임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1,506천 원)이며,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1,563천 원)와 경북(1,590천 원) 등의 순서임

• 표 2-8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현황 •

구분	지방세(백만 원)	인구(명)	1인당 부담액(천 원)
충북	2,502,337	1,600,837	1,563
경기	23,389,121	13,427,014	1,742
강원	2,447,768	1,542,840	1,587
충남	3,982,773	2,121,029	1,878
전북	2,717,115	1,804,104	1,506
전남	3,192,504	1,851,549	1,724
경북	4,196,550	2,639,422	1,590
경남	5,595,327	3,340,216	1,675

주 1 : 지방세수입은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인구는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

주 2 : 시도+시군구 금액 기준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 충청북도(광역+기초)의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출은 12조 6,738억 원임
 -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4조 2,744억 원으로 총 지출의 33.7%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12.6%, 1조 5,931억 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은 2,638억 원으로 총 지출의 2.1%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3,272억 원, 2.6%)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961억 원, 3.1%) 등의 순서임

• 표 2-9 |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

구분	금액(백만 원)	비율(%)
합계	12,673,847	100.0
일반공공행정	825,577	6.5
공공질서 및 안전	843,458	6.7
교육	327,176	2.6
문화 및 관광	660,231	5.2
환경	869,246	6.9
사회복지	4,274,393	33.7
보건	263,807	2.1
농림해양수산	1,593,130	12.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6,112	3.1
교통및물류	600,681	4.7
국토 및 지역개발	633,468	5.0
예비비	151,814	1.2
기타	1,234,754	9.7

주 1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주 2 : 시도+시군구 금액 기준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충청북도(광역+기초)의 재정자립도는 28.3%이며, 도 평균인 30.8% 보다 낮은 수준임
 - 경기의 재정자립도가 57.3%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이 22.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충청북도(광역+기초)의 재정자주도는 63.2%이며, 도 평균인 64.2%보다 낮은 수준임
 - 강원도의 재정자주도가 67.5%로 가장 높은 반면, 전북이 6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대체적으로 다른 도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표 2-10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단위 : %)

구분	충북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재정자립도	28.3	57.3	24.5	32.3	23.1	22.2	24.9	33.5
재정자주도	63.2	67.2	67.5	64.4	60.8	63.1	64.1	62.9

주 1 : 2021년 당초예산 기준(예산과목 개편 후 기준)

주 2 : 시도+시군구 금액 기준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 2019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충청북도(광역+기초)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6억 원이며, 도 평균인 4,280억 원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수료수입이 546억 원(27.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용료수입(443억 원, 22.0%)과 이자수입(431억 원, 21.4%) 순서로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은 도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 지역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1조 4,18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충청북도가 2,016억 원으로 가장 적음
 - 충청북도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모든 항목에서 도 지역 평균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표 2-11 | 경상적 세외수입(일반회계) 세목별 지역별 현황 •

(단위 : 백만 원)

항목	충북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재산임대 수입	8,078	64,162	12,274	10,455	5,478	10,296	16,133	14,081
사용료 수입	44,329	331,498	57,519	57,229	58,906	70,686	82,497	104,308
수수료 수입	54,578	420,845	66,469	63,379	60,175	53,971	63,559	106,860
사업수입	21,220	82,274	55,913	47,285	33,286	28,243	35,598	33,523
징수교부금수입	30,223	345,106	30,519	44,007	30,712	34,618	46,096	65,813
이자수입	43,137	174,804	61,110	52,681	52,699	83,193	77,419	76,797
계	201,565	1,418,689	283,804	275,036	241,256	281,007	321,302	401,382

주 1 : 2019년 결산, 징수액 기준

주 2 : 시도+시군구 금액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2020). 「2020 지방세외수입 통계연보(2019년 결산기준)」

III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요

1.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

목적과 기능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둠
 - 즉, 지역 간 세원 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임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자원보장 기능은 법정률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법정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조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연혁

- 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62년 「지방교부세법」이 제정되었음

- 1983년 법정률 부활을 통해 내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보장하였으며, 이후 3차례 법정률 조정을 통해 현재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보장하고 있음
- 2005년 증액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었음
-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음
-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이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로 상향 조정되었음

• 표 3-1 |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혁 •

구분	주요 내용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법」 제정(국세 중 특정 세목의 34.68% 교부)
1962년	「지방교부세법」 제정(법정률제 운영)
1973~1982년	“8·3 조치”로 법정률 유보(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1983년	법정률 부활(내국세의 13.27%), 증액교부금 신설(1991년 지방양여금 신설)
2000년	법정률 조정(내국세의 13.27% → 15.0%)
2005년	법정률 조정(내국세의 15.0% → 19.13%), 증액교부금·지방양여금 폐지, 분권교부세·부동산교부세 신설
2006년	법정률 조정(내국세의 19.13% → 19.24%), 분권교부세율 인상(내국세의 0.83% → 0.94%)
2014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간 재원조정(96%:4% → 97%:3%)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 상향 조정(담배 개별소비세의 20% → 45%)

자료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재원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 총액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 금액으로 함

- 여기서 내국세의 19.24%로 표시되는 부분을 지방교부세 ‘법정률’이라고 하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결정된 ‘세원의 배분율’이라 할 수 있음
-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도 증감시켜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재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다음 다음연도까지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

• 2020년도 기준 국세 총액은 291조 9,969억 원임

- 지방교부세와 관련되는 내국세는 251조 885억 원, 부동산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는 3조 3,21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1조 8,492억 원임

• 표 3-2 | 2020년 국세 세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 원)

구분	국세	지방교부세	비고
합계	291,966,890	52,206,826	
내국세(소계)	251,088,520	48,171,562	내국세의 19.24%
소득세	88,471,840		
법인세	64,419,010		
상속세	8,307,340		
부가가치세	68,870,980		
개별소비세	10,227,880		
(담배개별소비세)	(1,849,200)	714,294	소방안전교부세
증권거래세	4,384,770		
인지세	1,052,330		
기타내국세	5,408,370		
종합부동산세	3,320,970	3,320,970	부동산교부세
관세	8,791,160		
교통·에너지·환경세	15,727,270		
교육세	5,189,430		
주세	3,327,530		
농어촌특별세	4,552,010		

자료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2020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52조 2,068억 원임
 - 정률분 교부세 48조 1,716억 원은 97%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 원과 3%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 1조 4,451억 원으로 나뉨

• 표 3-3 | 2020년 지방교부세 규모 •

(단위 : 억 원, %)

구분	배분비율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총계		524,618	522,068	-2,550	-0.49%
정률분(소계)	내국세의 19.24%	490,749	481,716	-9,033	-1.84%
보통교부세	정률분 중 97%	476,026	467,264	-8,762	-1.84%
특별교부세	정률분 중 3%	14,722	14,451	-271	-1.84%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28,494	33,210	4,716	16.55%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19년 27.5% → 20년 38.75%)	5,375	7,143	1,768	32.89%

주 : 당초예산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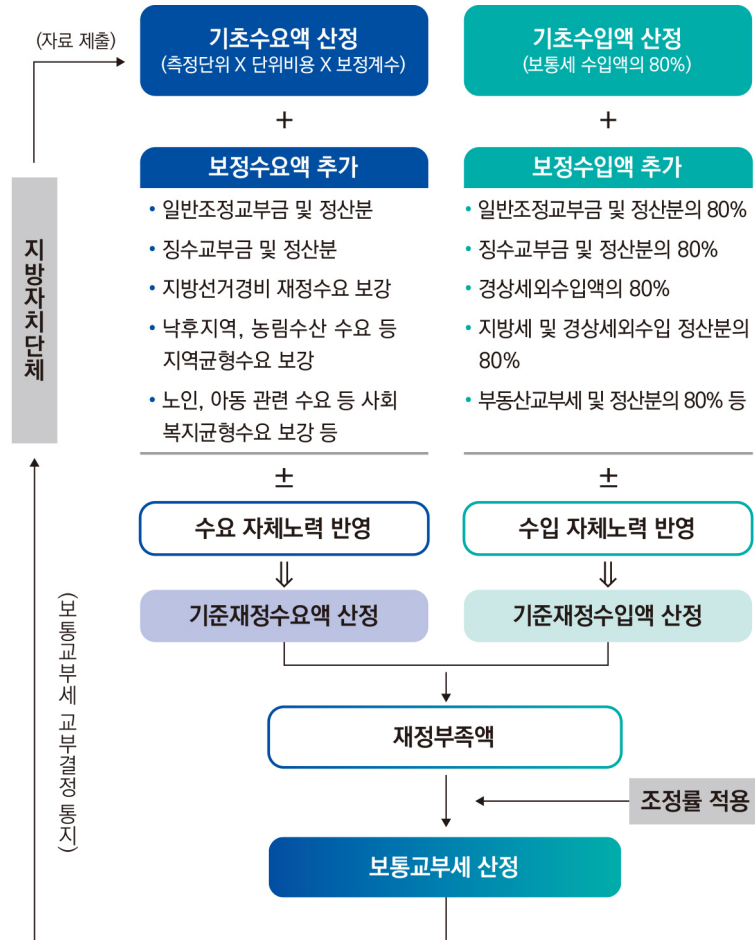
2.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요

-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됨
-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 ‘보정수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하는 자료를 사용함
 - 기초수요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와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함

- 보정수요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 균형수요 등으로 구성됨
- 자체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의 노력 정도를 반영함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 ‘보정수입’,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함
 - 기초수입은 「지방세법」 상 보통세 수입의 80%로 산정함
 - 보정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시·도세 징수교부금 등의 80%를 반영하여 산정함
 - 자체노력은 세입 증대 노력 등을 반영함
- 다음으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을 산정함
 - 재정부족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산한 후에, 보통교부세 총액이 재정부족액 총액과 합치될 수 있도록 조정률을 구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이 조정률을 각각 곱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산정함

• 그림 3-1 | 보통교부세 산정절차 •



자료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첫째, 기준재정수요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여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로 산정됨

-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액에 의한 경비 지출액 또는 실제로 지출하려는 예산액 등 구체적인 실적을 그 재정수요의 산정에 사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나 독자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함
- 둘째,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일반재원으로서의 재정수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 목적의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으로 충당되는 재정수요는 제외됨
- 다만,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게 되므로 이는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고 있음

• 표 3-4 | 기초수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산정기준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표시단위
1. 일반 행정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수	명
	나. 일반 관리비	공무원 수		명
	다. 안전관리비	인구 수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전년도 1월-6월까지 매월말 기준 6개월 평균)	명
2. 문화 환경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 수		명
	나. 환경보호비	인구 수	명	
3. 사회 복지비	가. 기초생활 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전년도 6월 30일 기준)	명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 (전년도 6월 30일 기준)	명
	다. 아동복지비	아동 수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18세 미만 인구 수 (전년도 6월 30일 기준)	명
	라. 장애인 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수(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명
	마. 보건사회 복지비	인구 수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전년도 1월-6월까지 매월말 기준 6개월 평균)	명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표시단위
가. 농업비	경지 면적	•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 답, 과수원 면적(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천 제곱미터
나. 임수산비	산림, 어장, 갯벌 면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 면적 등	천 제곱미터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 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체 종사자 수(전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명
라. 도로관리비	도로 면적	•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포장, 미포장 및 미개통도로) 면적(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천 제곱미터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수(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면적(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천 제곱미터

자료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입 실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수준의 일반재원 수입액으로서 산정됨
 - 다만, 기준재정수입액은 산정된 결과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80%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입의 여력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신축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되지 않는 20%의 유보재원은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에 포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충당하게 됨
- 기초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9종을 대상으로 추계하고, 추계된 보통세 수입 총액의 80%를 반영함
 -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수입의 대상이 되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임

- 보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보통세의 80%에 상당한 기준재정 수입액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 등을 그 대상으로 산정함
 - 보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시·군의 일반조정교부금, 시·도세 징수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수입액 등의 80%를 반영함
 - 또한 전전년도 산정 정산액(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시·군의 일반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등)의 80%를 보정수입으로 반영함
 - 2020년 보정수입 추계 시 경상적 세외수입은 3년 평균방식으로, 시·군의 일반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은 해당연도 시·도세 추계액 등을 기초로,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예정금액의 80%를 보정수입으로 각각 반영하였음

보통교부세 감액 제도

- 교부세 산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받은 금액을 반환시키거나 감액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않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법 제5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移用)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감액 대상이 됨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사항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중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이 확대되었으며,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보정수요에 대한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음

· 표 3-5 | 최근 10년 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사항 ·

구분	주요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노력 항목 범주화(세출효율화, 세입확충), 각 항목 등급별 가중치 부여 •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특례(통합 전 수준 유지) • 농어촌지역수요 및 마을상수도수요 산정방식 개선, 국가등비과세 보정수요 폐지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을 상향(12%→15%) • 기준재정수입 산정 지방세 항목 변경(15개→10개), 보정수입 반영하는 경상세외수입에 사업수입 포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수요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수요 보정수요 반영

구분	주요 개선사항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등록외국인수 추가 반영, 고령단체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요 반영률 상향 조정) •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낙후지역 신규 지정, 낙후지역 보정수요 상향, 군부대 지역 미군 및 군속 이외의 가족수 추가) • 대도시 행정 특례,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수요 조정,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단체유형 신설 • 보정수요 개선(인구격감수요 폐지, 보행자 전용 자전거도로 연장 제외, 산업단지 면적에 대한 환경보호수요 추가) •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자치단체 실질수입 보정수입으로 반영, 지방세 징수율 인센티브 부여 • 지방자치단체 감액 및 자체노력 반영내역 언론 공개, 감액재원 인센티브 활용 근거조항 신설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자치구 반영비를 시군과 동일한 20% 적용, 일반사회복지비 사회복지균형수요에 북한이탈주민수 반영) •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1,149개 면 중에서 전국 하위 1/3→1/2로 확대) • 재정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인건비 절감액 반영률 10%→20%, 지방인력감축 항목 폐지) • 무료예방접종인원수 제외, 접경지역 지정면적 시군 지정면적으로 확대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조정 (영유아·청소년비→영유아복지비+아동복지비, 도로개량비+도로교통비→도로관리비) • 보정수요 정비(지역균형수요 중 안전관리수요 신설, 환경보호비 해안지역수요 보정 확대, 문화재수요 부활, 노인인구 비율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 자체노력 항목 정비(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폐기물 절감, 읍면동 통합 항목 폐지 및 초과 감면액에 대한 페널티 추가) • 세종특별자치시 단층제 행정계층 특수성 반영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반영 조정(시도 35%, 시군 65%) 및 지역균형수요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면적 연차별 차감 반영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조정(영유아복지비+아동복지비→아동복지비, 농림수산비→농업비+임업수산비, 도로관리비→도로관리비+교통관리비) • 측정단위 정비(아동복지비: 아동수, 농업비: 경지면적, 임수산비: 임야면적 및 어장·갯벌면적, 도로관리비: 도로면적,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및 행정구역면적) • 보정수요 정비(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버스운수재정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운영, 자전거도로 수요 등 신설) • 자체노력 개선(인건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탄력세율 반영비율 확대, 지방세 세원 발굴 등 정비·신설)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 개선(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반영기준 일치)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20%→23%) 및 성장촉진지역 지역균형수요 반영 • 인건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50%→100%), 지방보조금 절감(20%→50%) 등 반영비율 확대 및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 신설 • 보통교부세 측정항목(보건비+일반사회복지비→보건사회복지비) 통합 및 산정방식 단순화 • 낙후지역 지정요건 구체적 규정 및 환경보호비 지역균형수요에 기업도시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추가 반영 • 기준재정수입액 항목 정비

구분	주요 개선사항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23%→26%) 및 출산장려 수요 및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신설 •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 수요, 송 변전시설 및 장사시설 수요 도입 및 낙후지역 수요 산정방식 개선 (인구밀도, 지방소득세 등 2개 지표 사용) • 도로관리비(미개설도로) 및 지역관리비(관리되지 않는 도시공원) 측정단위 정비 • 신규 수요 도입 시 일정 기한까지만 반영하는 일몰제 수요산정방식 도입 • 자체노력 산정방식 개선(지방세 체납액 산정 시 소송 중인 지방세 체납액 제외)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인구 산정 시 제외 • 기초생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26%→30%) • 출산장려 수요 강화 및 노인복지비 고령단체 가중수요 반영률 상향 • 기피시설 수요 반영률 상향 및 외국인 및 다문화 보정수요 대상 확대 • 유동인구 및 도시공원 수요 등 가중치 확대, 일몰제 확대 및 자체노력 항목 개선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수요 내에 고용위기지역 수요 신설 • 폐기물 관련 보정수요에 재활용 처리량 추가 및 반영비율 확대(5%→10%) • 접경지역 및 성장촉진지역 수요 반영비율 상향(10%→20%), 규제지역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규제지역 관련 수요에 가중치 적용 • 중위단체 불응률 초과 상위 5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페널티 항목 신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인센티브 추가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촉진, 접경 및 폐광지역 수요 확대 및 고용위기 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 동종단체 평균 대비 불응이 많은 단체에 대한 페널티, 이월이 적은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미세먼지 수요 신설,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확대 • 고령화 비율이 높은 단체에 대한 수요 추가 반영, 외국인과 유동인구에 대한 수요 추가 반영

자료 : 행정안전부(2011~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IV

충청북도 보통교부세 현황 분석

1. 충청북도 본청 현황

1) 보통교부세

- 충청북도 본청의 보통교부세는 2016년 477,531백만 원에서 2020년 700,585백만 원으로 연평균 10.06% 증가하였음
 - 충청북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보통교부세 연평균 증가율은 모두 충청북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도 지역의 보통교부세 연평균 증가율은 7.61%임
- 다만 보통교부세 교부액 규모 측면에서는 충청북도가 다른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최근 5년 평균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615,946백만 원으로 경남(614,350백만 원)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
- 최근 5년 동안 충청북도의 보통교부세 증가 속도가 다른 도 지역보다 빠르기는 하지만, 보통교부세 규모가 다른 도 지역에 비해 많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 | 보통교부세 교부액 현황 : 도 본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충북	477,531	534,093	648,824	718,696	700,585	615,946	10.06%
경기	257,664	127,496	145,976	164,125	160,992	171,251	-11.09%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강원	809,897	885,957	1,020,688	1,052,896	1,007,444	955,376	5.61%
충남	549,822	583,751	701,366	760,097	739,501	666,907	7.69%
전북	682,024	775,669	885,757	1,024,047	982,688	870,037	9.56%
전남	771,378	852,056	996,964	1,141,292	1,108,122	973,962	9.48%
경북	851,015	845,514	985,292	1,182,329	1,162,212	1,005,272	8.10%
경남	562,199	552,969	595,252	693,538	667,790	614,350	4.40%
도 평균①	620,191	644,688	747,515	842,128	816,167	734,138	7.11%
도 평균②	704,389	749,319	864,220	975,700	944,626	847,651	7.61%

주 1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주 2 :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포함되었으며, 위의 금액은 분권교부세 보전분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충청북도 본청의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16년 300,027원에서 2020년 437,637원으로 연평균 9.90% 증가하였음
 -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북(10.47%)과 전남(10.24%) 지역이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도 지역의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연평균 증가율은 8.13%로 나타났음
-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교부액 규모 측면에서는 충청북도가 다른 도 지역에 비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최근 5년 평균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385,505원이며,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지역의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618,252원)으로 나타났음
- 주민 1인당 교부액 기준의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 충청북도의 보통교부세 증가 속도가 다른 도 지역보다 빠르기는 하지만, 보통교부세 규모는 다른 도 지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 |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교부액 현황 : 도 분청 ·

(단위 :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충북	300,027	334,974	405,705	449,183	437,637	385,505	9.90%
경기	20,262	9,903	11,163	12,396	11,990	13,143	-12.29%
강원	522,243	571,533	661,473	683,033	652,980	618,252	5.74%
충남	262,229	275,774	329,856	357,910	348,652	314,884	7.38%
전북	365,738	418,239	482,220	562,998	544,696	474,778	10.47%
전남	405,154	449,296	529,464	610,726	598,484	518,625	10.24%
경북	315,144	314,118	368,082	443,512	440,328	376,237	8.72%
경남	166,633	163,581	176,424	206,253	199,924	182,563	4.66%
도 평균①	294,679	317,177	370,548	415,751	404,336	360,498	8.23%
도 평균②	339,523	365,424	424,586	477,405	464,177	414,223	8.13%

주 1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주 2 :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포함되었으며, 위의 금액은 분권교부세 보전분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 기준재정수요액

합계

- 충청북도 분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은 2016년 1,220,842백만 원에서 2020년 1,764,945백만 원으로 연평균 9.65% 증가하였음
 - 8개 도 지역의 평균 기준재정수요액과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도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1.24%와 9.89%로 충청북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준재정수요액 규모 측면에서는 충청북도가 도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최근 5년 평균 기준재정수요액은 1,502,226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충청북도 본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증가 속도 및 규모 측면에서 다른 도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표 4-3 | 기준재정수요액 현황 : 도 본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충북	1,220,842	1,304,636	1,519,736	1,700,969	1,764,945	1,502,226	9.65%
경기	4,687,517	5,624,696	6,550,916	7,738,380	8,008,198	6,347,858	14.33%
강원	1,327,614	1,473,160	1,809,386	2,005,253	2,097,163	1,742,515	12.11%
충남	1,502,692	1,690,187	1,941,589	2,228,007	2,287,229	1,929,941	11.07%
전북	1,412,965	1,548,285	1,750,624	2,004,058	2,015,308	1,746,248	9.28%
전남	1,577,365	1,725,365	1,998,456	2,210,440	2,268,877	1,956,101	9.51%
경북	2,137,399	2,323,462	2,671,993	2,988,936	3,003,962	2,625,150	8.88%
경남	2,064,026	2,239,323	2,495,395	2,922,046	2,944,258	2,533,010	9.29%
도 평균①	1,991,303	2,241,139	2,592,262	2,974,761	3,048,743	2,569,641	11.24%
도 평균②	1,670,344	1,833,297	2,111,241	2,393,123	2,436,133	2,088,827	9.89%

주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초수요

- 충청북도 본청의 기초수요는 2016년 782,075백만 원에서 2020년 1,105,671백만 원으로 연평균 9.04% 증감하였음
 - 8개 도 지역의 평균 기초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9.13%로 충청북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도 지역의 기초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8.62%로 충청북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수요 규모 측면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최근 5년 평균 기초수요 규모는 959,239백만 원으로 도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4 | 기초수요 현황 : 도 본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충북	782,075	831,738	975,801	1,100,909	1,105,671	959,239	9.04%
경기	2,341,369	2,552,603	2,967,245	3,513,585	3,493,537	2,973,668	10.52%
강원	969,380	1,011,431	1,192,876	1,315,448	1,330,622	1,163,951	8.24%
충남	947,636	1,023,285	1,195,834	1,349,193	1,348,385	1,172,867	9.22%
전북	944,572	981,077	1,137,711	1,267,610	1,265,232	1,119,240	7.58%
전남	1,029,483	113,451	1,268,896	1,447,882	1,449,499	1,061,842	8.93%
경북	1,271,785	1,346,011	1,562,321	1,748,059	1,743,827	1,534,401	8.21%
경남	1,150,892	1,241,607	1,452,613	1,658,144	1,649,999	1,430,651	9.42%
도 평균①	1,179,649	1,137,650	1,469,162	1,675,104	1,673,347	1,426,982	9.13%
도 평균②	1,052,291	952,810	1,301,709	1,464,389	1,464,594	1,247,159	8.62%

주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정수요

- 충청북도 본청의 보정수요는 2016년 431,249백만 원에서 2020년 666,855백만 원으로, 연평균 11.51% 증가하였음
 - 8개 도 지역과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도 지역의 보정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09%와 11.77%로 모두 충청북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정수요 규모 측면에서는 충청북도의 최근 5년 평균 보정수요는 526,589백만 원으로, 도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5 | 보정수요 현황 : 도 분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충북	431,249	465,845	465,845	603,150	666,855	526,589	11.51%
경기	2,318,166	3,082,571	3,082,571	4,198,773	4,490,165	3,434,449	17.97%
강원	361,726	463,363	463,363	692,241	773,112	550,761	20.91%
충남	562,031	667,761	667,761	861,235	935,816	738,921	13.59%
전북	486,627	549,374	549,374	711,043	741,636	607,611	11.11%
전남	552,179	612,219	612,219	766,315	814,531	671,493	10.21%
경북	859,291	970,920	970,920	1,236,519	1,251,225	1,057,775	9.85%
경남	902,219	988,975	988,975	1,249,481	1,296,597	1,085,249	9.49%
도 평균①	809,186	975,129	975,129	1,289,845	1,371,242	1,084,106	14.09%
도 평균②	620,679	708,769	708,769	919,472	968,820	785,302	11.77%

주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자체노력

- 충청북도 분청의 최근 5년 평균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은 -1,402백만 원으로 인센티브보다 페널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8개 도 지역의 최근 5년 평균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은 3,433백만 원으로 페널티보다 인센티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도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역시 2,025백만 원으로 페널티보다 인센티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의 2020년 기준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은 -7,581백만 원으로 도 지역 중에서 페널티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는 2017년까지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부터 페널티를 받고 있으며, 도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최근 3년 연속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준재정수요액 관련 패널티의 주요 원인으로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과 ‘지방보조금 절감’이 있으며, 특히 ‘행사·축제 경비 절감’은 2018년 -7,200백만 원, 2019년 1,411백만 원, 2020년 -14,485백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6 |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현황 : 도 분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충북	7,518	7,053	-10,910	-3,090	-7,581	-1,402
경기	27,982	-10,478	15,552	26,022	24,496	14,000
강원	-3,492	-1,634	2,380	-2,436	-6,571	-2,351
충남	-6,971	-859	-14,935	17,579	3,028	-432
전북	-7,234	17,834	-8,111	25,405	8,440	7,267
전남	-4,297	-305	-4,644	-3,757	4,847	-1,631
경북	6,323	6,531	6,380	4,358	-1,090	4,500
경남	10,915	8,741	-7,752	14,421	-2,338	4,797
도 평균①	3,843	3,360	-2,755	9,813	2,904	3,433
도 평균②	-793	5,051	-4,447	9,262	1,053	2,025

주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3) 기준재정수입액

합계

- 충청북도 본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은 2016년 688,676백만 원에서 2020년 926,557백만 원으로 연평균 7.70% 증가하였음
 - 8개 도 지역과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도 지역의 기준재정수입액 연평균 증가율은 14.34%와 10.18%로 충청북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평균 충청북도의 기준재정수입액 규모는 806,686백만 원으로 강원(666,027백만 원), 전북(764,229백만 원)과 함께 하위권임

• 표 4-7 | 기준재정수입액 현황 : 도 본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충북	688,676	736,802	811,518	869,876	926,557	806,686	7.70%
경기	4,400,891	5,656,599	7,810,539	8,500,878	9,021,754	7,307,841	19.66%
강원	424,472	532,870	693,540	787,694	891,557	666,027	20.39%
충남	889,724	1,069,734	1,175,202	1,348,569	1,402,390	1,177,124	12.05%
전북	654,134	724,600	783,556	819,946	839,258	764,299	6.43%
전남	719,506	823,543	909,440	890,349	942,850	857,138	6.99%
경북	1,189,130	1,426,480	1,596,505	1,619,807	1,613,300	1,489,044	7.92%
경남	1,439,237	1,653,126	1,845,349	2,120,219	2,145,174	1,840,621	10.49%
도 평균①	1,300,721	1,577,969	1,953,206	2,119,667	2,222,855	1,834,884	14.34%
도 평균②	886,034	1,038,392	1,167,265	1,264,431	1,305,755	1,132,375	10.18%

주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초수입

- 충청북도 본청의 기초수입은 2016년 507,472백만 원에서 2020년 880,080백만 원으로, 연평균 14.76% 증가하였음
 - 충청북도 본청의 기초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8개 도 지역(12.96%)과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도 지역(12.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수입 규모 측면에서 충청북도의 최근 5년 평균 기초수입은 678,063백만 원으로 강원(630,202백만 원)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

• 표 4-8 | 기초수입 현황 : 도 본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충북	507,472	571,455	676,607	754,700	880,080	678,063	14.76%
경기	4,379,650	5,060,532	5,424,254	7,021,276	7,150,774	5,807,297	13.04%
강원	444,218	561,866	577,759	751,996	815,170	630,202	16.39%
충남	801,540	877,543	996,898	1,151,426	1,336,076	1,032,697	13.63%
전북	537,320	625,018	655,943	844,298	798,093	692,134	10.40%
전남	541,359	604,904	774,281	806,852	929,362	731,352	14.47%
경북	879,862	1,048,822	1,275,516	1,532,178	1,554,403	1,258,156	15.29%
경남	1,548,790	1,585,606	1,637,530	2,026,958	2,229,319	1,805,641	9.53%
도 평균①	1,205,026	1,366,968	1,502,349	1,861,211	1,961,660	1,579,443	12.96%
도 평균②	792,182	883,960	986,321	1,185,618	1,277,071	1,025,030	12.68%

주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정수입

- 충청북도 본청의 보정수입은 2016년 160,839백만 원에서 2020년 49,914백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 충청북도는 다른 도 지역과 달리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정수입이 감소하였음
 - 보정수입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지방세 정산분(보정액)’으로, 2016년 90,229백만 원에서 2020년 17,223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충청북도 본청의 최근 5년 평균 보정수입은 121,013백만 원으로 경남(21,170백만 원), 강원(33,091백만 원), 전북(65,703백만 원) 등과 함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9 | 보정수입 현황 : 도 본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충북	160,839	153,220	130,501	110,593	49,914	121,013
경기	-18,199	540,273	2,271,970	1,538,693	1,856,497	1,237,847
강원	-23,399	-46,480	118,318	37,547	79,470	33,091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충남	72,886	186,072	171,116	198,806	53,230	136,422
전북	113,835	84,501	70,141	25,969	34,068	65,703
전남	185,190	204,541	131,456	76,271	12,023	121,896
경북	297,438	357,391	307,467	106,732	57,654	225,336
경남	-138,579	73,399	189,267	90,262	-108,499	21,170
도 평균①	81,251	194,115	423,780	273,109	254,295	245,310
도 평균②	84,562	143,237	164,628	89,265	21,324	100,603

주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자체노력

- 충청북도 본청의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은 2016년 20,365백만 원에서 2020년 -3,437백만 원으로 변화하였음
 - 충청북도는 2020년 기준으로 강원과 함께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임
 - 지난 5년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0 |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현황 : 도 본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충북	20,365	12,127	4,410	4,583	-3,437	7,610
경기	39,440	55,794	114,315	-59,091	14,483	27,287
강원	3,653	17,484	-2,537	-1,849	-3,083	2,734
충남	15,298	6,119	7,188	-1,663	13,084	8,005
전북	2,979	14,081	57,472	-50,321	7,097	6,262
전남	-7,043	12,098	3,803	7,226	1,465	3,510
경북	11,830	20,267	13,522	19,103	1,243	13,193
경남	29,026	-5,879	18,552	2,999	24,355	13,811
도 평균①	14,444	16,511	27,091	-9,877	6,901	11,014
도 평균②	9,291	10,695	16,333	-4,084	7,360	7,919

주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4) 재정부족액

- 충청북도 본청의 재정부족액은 2016년 532,166백만 원에서 2020년 838,388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2016년 기준 경기를 제외한 도 지역에서 재정부족액이 가장 적었으나, 2020년 기준 경남의 재정부족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동안 충청북도 재정부족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3%로 도 지역 중 재정부족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음
 - 8개 도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4.57%이며, 충청북도와 경기를 제외한 6개 도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9.56%로 나타났음

• 표 4-11 | 재정부족액 현황 : 도 본청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충북	532,166	567,834	708,218	831,093	838,388	695,540	12.03%
경기	286,626	-31,903	-1,259,623	-762,498	-1,013,556	-504,614	-
강원	904,142	940,290	1,115,846	1,217,559	1,205,606	1,076,689	7.46%
충남	612,968	620,453	766,387	879,438	884,839	752,817	9.61%
전북	758,831	824,685	967,068	1,184,112	1,176,050	982,149	11.58%
전남	857,859	903,822	1,089,016	1,320,091	1,326,027	1,099,363	11.50%
경북	948,269	896,982	1,075,488	1,369,129	1,390,662	1,136,106	10.05%
경남	624,789	586,197	650,046	801,827	799,083	692,388	6.34%
도 평균①	690,706	663,545	639,056	855,094	825,887	734,858	4.57%
도 평균②	784,476	795,405	943,975	1,128,693	1,130,378	956,585	9.56%

주 : 도 평균①은 8개 도의 평균을, 도 평균②는 충북과 경기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 충청북도 시군 현황

1) 시 지역

보통교부세

- 충청북도 시 지역의 평균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2016년 283,791백만 원에서 2020년 400,135백만 원으로 연평균 8.97% 증가하였음
 - 최근 5년 간 전국 시 지역의 보통교부세 교부액 연평균 증가율은 8.84%이며, 충청북도 소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의 보통교부세 연평균 증가율은 8.88%임
- 충청북도 소재 시 지역은 다른 시 지역에 비해 보통교부세 교부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시 지역의 최근 5년 동안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평균 354,135백만 원으로, 전체 시 지역의 평균(219,684백만 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간 충청북도 시 지역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증가 속도도 빠르고 규모 측면에서도 다른 시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2 | 보통교부세 교부액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청주	356,765	373,445	416,658	488,023	483,789	423,736	7.91%
충주	258,581	313,574	353,810	392,442	380,706	339,823	10.15%
제천	236,028	278,231	304,219	339,841	335,910	298,846	9.22%
충북 평균	283,791	321,750	358,229	406,769	400,135	354,135	8.97%
시 평균 (충북 포함)	174,077	198,037	227,254	254,756	244,294	219,684	8.84%
시 평균 (충북 제외)	169,089	192,579	221,389	248,050	237,615	213,745	8.88%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재정수요액

① 합계

- 충청북도 시 지역의 평균 기준재정수요액은 2016년 551,471백만 원에서 2020년 791,662백만 원으로, 연평균 9.46% 증가하였음
 - 최근 5년 간 전체 시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연평균 11.69%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 그리고 충청북도 소재 시 지역을 제외할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1.88%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시 지역의 최근 5년 동안 기준재정수요액 규모는 평균 679,132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청주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이 평균 1,077,236백만 원으로, 충주시(534,372백만 원) 및 제천시(425,788백만 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동안 충청북도 시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은 규모 측면에서 다른 시 지역보다 크지만,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3 | 기준재정수요액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청주	906,176	985,689	1,034,120	1,221,510	1,238,683	1,077,236	8.13%
충주	420,589	465,654	532,159	625,024	628,432	534,372	10.56%
제천	327,647	369,723	423,974	499,725	507,872	425,788	11.58%
충북 평균	551,471	607,022	663,418	782,086	791,662	679,132	9.46%
시 평균 (충북 포함)	360,676	401,782	459,545	540,623	561,296	464,784	11.69%
시 평균 (충북 제외)	352,004	392,727	450,416	529,970	551,423	455,308	11.88%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② 기초수요

- 충청북도 시 지역의 기초수요는 2016년 453,674백만 원에서 2020년 671,001백만 원으로 연평균 10.28% 증가하였음
 - 기초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청주시(11.20%), 충주시(9.35%), 제천시(9.12%)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의 기초수요는 연평균 1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시 지역의 최근 5년 간 기초수요는 평균 572,118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의 평균(391,315백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제천시(348,196백만 원)는 충청북도 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최근 5년 동안 충청북도 시 지역의 기초수요는 규모 측면에서 다른 시 지역보다 크지만,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4 | 기초수요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청주	712,836	810,759	917,065	1,066,587	1,089,760	919,401	11.20%
충주	364,728	394,833	442,641	520,172	521,403	448,755	9.35%
제천	283,458	307,220	343,204	405,260	401,839	348,196	9.12%
충북 평균	453,674	504,271	567,637	664,006	671,001	572,118	10.28%
시 평균 (충북 포함)	314,286	348,179	395,298	460,924	476,137	398,965	10.94%
시 평균 (충북 제외)	307,950	341,293	387,582	451,964	467,786	391,315	11.02%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③ 보정수요

- 충청북도 시의 보정수요는 2016년 92,881백만 원에서 2020년 117,976백만 원으로 연평균 6.16% 증가하였음
 - 지난 5년 간 충주시(18.16%)와 제천시(28.88%)가 보정수요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반대로 청주시는 연평균 -6.20%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음
 - 충청북도 소재 시 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7.67%임
- 충청북도 시의 최근 5년 평균 보정수요는 101,266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시 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의 평균(61,324백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동안 충청북도 시 지역의 보정수요는 규모 측면에서 다른 시 지역보다 크지만, 평균적인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5 | 보정수요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청주	187,248	187,248	120,225	141,676	144,932	156,266	-6.20%
충주	53,296	53,296	84,940	98,164	103,892	78,718	18.16%
제천	38,098	38,098	75,292	87,486	105,105	68,816	28.88%
충북 평균	92,881	92,881	93,486	109,109	117,976	101,266	6.16%
시 평균 (충북 포함)	44,485	51,133	62,636	74,263	82,580	63,019	16.73%
시 평균 (충북 제외)	42,285	49,291	61,254	72,725	81,063	61,324	17.67%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④ 자체노력

- 충청북도 시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은 2016년 4,916백만 원에서 2020년 2,685백만 원으로 페널티보다 인센티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시 지역의 최근 5년 간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은 평균 4,697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시를 제외한 시 지역의 평균(2,858백만 원)보다 인센티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충청북도 소재 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인센티브 규모가 2016년 대비 2020년에 증가했지만, 충청북도 소재 시의 경우에는 감소하였음

• 표 4-16 |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청주	6,092	6,092	-3,170	13,247	3,991	5,250
충주	2,565	2,565	4,578	6,688	3,137	3,907
제천	6,091	6,091	4,578	6,979	928	4,933
충북 평균	4,916	4,916	1,995	8,971	2,685	4,697
시 평균 (충북 포함)	1,906	3,021	1,595	5,445	2,717	2,937
시 평균 (충북 제외)	1,769	2,938	1,577	5,290	2,718	2,858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재정수입액

① 합계

- 충청북도 시 지역의 기준재정수입액은 2016년 235,532백만 원에서 2020년 312,822백만 원으로 연평균 7.35% 증가하였음
 - 기준재정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제천시(12.93%), 충주시(6.78%), 청주시(6.7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소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3.06%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시 지역의 최근 5년 간 기준재정수입액은 평균 273,535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의 평균(213,743백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기준재정수입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582,662백만 원)로 나타났음

- 청주시를 제외한 충주시와 제천시는 기준재정수입액 규모가 나머지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증가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7 | 기준재정수입액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청주	508,547	508,547	579,320	657,164	659,734	582,662	6.72%
충주	132,954	132,954	146,159	170,816	172,842	151,145	6.78%
제천	65,094	65,094	91,006	106,910	105,889	86,799	12.93%
충북 평균	235,532	235,532	272,162	311,630	312,822	273,535	7.35%
시 평균 (충북 포함)	166,728	188,329	211,434	245,783	269,149	216,285	12.72%
시 평균 (충북 제외)	163,600	186,246	208,715	242,878	267,277	213,743	13.06%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② 기초수입

- 충청북도 시 지역의 기초수입은 2016년 143,167백만 원에서 2020년 194,471백만 원으로 연평균 7.96% 증가하였음
 - 기초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청주시(8.25%), 제천시(7.56%), 충주시(6.85%)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3%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시 지역의 최근 5년 간 기초수요는 평균 171,121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시를 제외한 시 지역의 평균(137,577백만 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청주시를 제외한 충주시와 제천시는 기초수입 규모가 나머지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증가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8 | 기초수입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청주	319,734	345,498	376,654	449,024	439,011	385,984	8.25%
충주	71,476	75,338	80,789	93,221	93,154	82,796	6.85%
제천	38,290	39,746	43,472	50,154	51,248	44,582	7.56%
충북 평균	143,167	153,527	166,972	197,466	194,471	171,121	7.96%
시 평균 (충북 포함)	114,859	126,190	136,813	148,963	168,170	138,999	10.00%
시 평균 (충북 제외)	113,573	124,984	135,462	146,823	167,043	137,577	10.13%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③ 보정수입

- 충청북도 시 지역의 보정수입은 2016년 89,794백만 원에서 2020년 118,916백만 원으로 연평균 7.27% 증가하였음
 - 특히 제천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23.51%로, 청주시 및 충주시와 비교할 때 보정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최근 5년 간 청주시의 보정수입 규모는 전국 시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주시와 제천시는 전국 시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간 충청북도 시 지역의 보정수입 규모는 나머지 시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19 | 보정수입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청주	186,528	207,120	195,940	193,529	219,801	200,584	4.19%
충주	59,121	48,865	60,829	772	81,717	50,261	8.43%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제천	23,734	29,570	47,559	54,625	55,229	42,143	23.51%
충북 평균	89,794	95,185	101,443	82,975	118,916	97,663	7.27%
시 평균 (충북 포함)	43,416	56,635	71,263	92,659	97,644	72,324	22.46%
시 평균 (충북 제외)	41,308	54,934	69,912	93,087	96,733	71,195	23.70%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④ 자체노력

-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측면에서 충청북도 시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5,455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까지는 페널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565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동안 충청북도 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은 5,727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충청북도 시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0 |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청주	2,285	35,442	6,726	14,611	922	11,997
충주	2,346	7,901	4,541	-177	-2,029	2,516
제천	3,070	4,567	75	2,131	-588	1,851
충북 평균	2,567	15,970	3,781	5,522	-565	5,455
시 평균 (충북 포함)	8,895	9,831	3,346	3,302	3,199	5,715
시 평균 (충북 제외)	9,182	9,560	3,327	3,204	3,360	5,727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재정부족액

- 충청북도 시 지역의 재정부족액은 2016년 315,943백만 원에서 2020년 478,841백만 원으로 연평균 10.95% 증가하였음
 - 충청북도 소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0.81%로 충청북도 시 지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최근 5년 간 충청북도 소재 시 지역의 재정부족액은 평균 399,707백만 원으로 전국 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간 충청북도 시 지역의 재정부족액은 규모 측면에서도 전국 시 평균보다 크고,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1 | 재정부족액 현황 : 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청주	397,629	397,629	454,800	564,346	578,949	478,671	9.85%
충주	287,646	333,550	386,000	454,208	455,590	383,399	12.18%
제천	262,553	295,840	332,068	392,815	401,983	337,052	11.24%
충북 평균	315,943	342,340	390,956	470,456	478,841	399,707	10.95%
시 평균 (충북 포함)	193,918	210,640	248,098	292,454	292,010	247,424	10.78%
시 평균 (충북 제외)	188,371	204,830	241,701	284,601	284,003	240,701	10.81%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 군 지역

보통교부세

- 충청북도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2016년 120,003백만 원에서 2020년 161,889백만 원으로 연평균 7.77% 증가하였음
 -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괴산군(9.20%), 음성군(8.8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7.40%로 충청북도 군 지역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보은군(6.23%), 영동군(6.47%), 증평군(7.28%)의 연평균 증가율은 충청북도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통교부세 교부액 규모 측면에서 충청북도 군 지역은 다른 군 지역에 비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최근 5년 평균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148,52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평균은 173,638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다른 군 지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2 | 보통교부세 교부액 현황 : 군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은	135,557	158,855	169,371	182,772	172,611	163,833	6.23%
옥천	130,559	159,434	170,656	187,870	178,627	165,429	8.15%
영동	169,127	189,613	210,786	225,093	217,330	202,390	6.47%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진천	91,030	100,252	104,398	125,943	123,637	109,052	7.95%
괴산	148,848	189,398	200,087	219,582	211,624	193,908	9.20%
음성	114,174	126,377	147,035	158,765	160,509	141,372	8.89%
단양	117,871	144,234	155,773	163,394	160,763	148,407	8.07%
증평	52,855	61,165	61,695	73,494	70,007	63,843	7.28%
충북 평균	120,003	141,166	152,475	167,114	161,889	148,529	7.77%
군 평균 (충북 포함)	145,422	161,542	183,390	198,169	193,239	176,352	7.37%
군 평균 (충북 제외)	142,942	159,554	180,374	195,140	190,180	173,638	7.40%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재정수요액

① 합계

- 충청북도 군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은 2016년 176,604백만 원에서 2020년 258,777백만 원으로 연평균 10.02% 증가하였음
 - 기준재정수요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괴산군(11.28%), 진천군(10.91%), 단양군(10.11%)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9.50%로 충청북도 군 지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최근 5년 간 기준재정수요액은 평균 222,170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군 지역의 평균(247,310백만 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기준재정수요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음성군(274,384백만 원)이며, 그 다음으로 영동군(268,366백만 원)과 괴산군(257,231백만 원) 등의 순서로 많게 나타났음
 - 최근 5년 간 평균 기준재정수요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증평군(106,874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표 4-23 | 기준재정수요액 현황 : 군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은	177,101	197,245	220,691	253,951	254,387	220,675	9.48%
옥천	184,866	206,805	229,268	267,918	267,030	231,177	9.63%
영동	217,024	239,773	267,884	308,354	308,794	268,366	9.22%
진천	171,855	187,945	211,860	231,898	260,078	212,727	10.91%
괴산	195,764	235,267	255,344	299,617	300,163	257,231	11.28%
음성	218,933	246,433	277,902	309,757	318,894	274,384	9.86%
단양	162,052	184,909	207,221	237,200	238,233	205,923	10.11%
증평	85,238	98,366	105,328	122,799	122,637	106,874	9.52%
충북 평균	176,604	199,593	221,937	253,937	258,777	222,170	10.02%
군 평균 (충북 포함)	201,680	219,625	250,745	288,634	289,457	250,028	9.45%
군 평균 (충북 제외)	199,234	217,671	247,935	285,249	286,464	247,310	9.50%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② 기초수요

- 충청북도 군 지역의 기초수요는 2016년 149,198백만 원에서 2020년 206,399백만 원으로 연평균 8.45% 증가하였음
 - 기초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진천군(10.04%)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단양군(7.72%)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8.41%로 충청북도 군 지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최근 5년 간 기초수요는 평균 181,781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평균(204,961백만 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음성군(232,516백만 원)과 영동군(210,781백만 원)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충청북도 군 지역의 기초수요 규모는 다른 군 지역보다 작은 반면에, 증가 속도는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4 | 기초수요 현황 : 군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은	145,228	157,556	175,650	201,872	197,974	175,656	8.05%
옥천	153,072	168,217	185,007	211,276	209,126	185,340	8.11%
영동	174,937	190,854	212,664	239,646	235,802	210,781	7.75%
진천	148,485	165,455	184,332	213,844	217,727	185,969	10.04%
괴산	167,436	182,956	202,740	231,607	228,653	202,678	8.10%
음성	188,757	210,097	233,462	264,171	266,094	232,516	8.96%
단양	139,941	152,091	168,025	190,695	188,412	167,833	7.72%
증평	75,725	84,523	92,234	107,481	107,403	93,473	9.13%
충북 평균	149,198	163,969	181,764	207,574	206,399	181,781	8.45%
군 평균 (충북 포함)	164,403	181,609	217,185	247,116	227,022	207,467	8.40%
군 평균 (충북 제외)	162,919	179,888	213,729	243,258	225,010	204,961	8.41%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③ 보정수요

- 충청북도 군 지역의 보정수요는 2016년 26,280백만 원에서 2020년 50,687백만 원으로 연평균 17.85% 증가하였음
 - 보정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괴산군(24.94%)과 단양군(21.53%) 등이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5.39%로 충청북도 군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최근 5년 간 보정수요는 평균 39,006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평균(56,715백만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최근 5년 간 보정수요 규모는 다른 군 지역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반면,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5 | 보정수요 현황 : 군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은	29,650	36,717	43,085	47,374	53,274	42,020	15.78%
옥천	31,402	36,309	44,327	52,237	58,714	44,598	16.94%
영동	38,686	46,332	54,032	64,396	70,540	54,797	16.20%
진천	20,463	23,613	31,236	34,392	40,669	30,075	18.73%
괴산	28,063	46,246	54,233	62,854	68,380	51,955	24.94%
음성	30,954	34,587	42,577	43,759	49,975	40,370	12.72%
단양	22,604	31,684	37,205	44,791	49,306	37,118	21.53%
증평	8,415	9,329	9,158	14,038	14,634	11,115	14.84%
충북 평균	26,280	33,102	39,482	45,480	50,687	39,006	17.85%
군 평균 (충북 포함)	35,634	41,275	48,038	105,467	62,731	58,629	15.19%
군 평균 (충북 제외)	34,722	40,478	47,203	99,615	61,555	56,715	15.39%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④ 자체노력

- 충청북도 군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은 2016년 1,126백만 원에서 2020년 1,692백만 원으로 페널티보다 인센티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최근 5년 간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은 평균 1,883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평균(4,828백만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19년의 경우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자체노력 평균은 18,387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군 지역의 3,383백만 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6 |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현황 : 군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보은	2,223	2,972	1,956	4,705	3,139	2,999
옥천	392	2,279	-66	4,406	-810	1,240
영동	3,401	2,587	1,188	4,312	2,452	2,788
진천	2,907	-1,123	-3,708	3,662	1,682	684
괴산	265	6,065	-1,629	5,156	3,130	2,597
음성	-778	1,749	1,863	1,827	2,825	1,497
단양	-503	1,134	1,991	1,714	515	970
증평	1,098	4,514	3,936	1,280	600	2,286
충북 평균	1,126	2,522	691	3,383	1,692	1,883
군 평균 (충북 포함)	1,658	1,471	1,527	20,009	1,070	5,147
군 평균 (충북 제외)	1,606	1,574	1,445	18,387	1,131	4,828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재정수입액

① 합계

- 충청북도 군 지역의 기준재정수입액은 2016년 42,984백만 원에서 2020년 65,133백만 원으로 연평균 10.95% 증가하였음
 - 기준재정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보은군(17.19%), 영동군(13.67%), 진천군(12.30%)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3%로 충청북도 군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최근 5년 간 기준재정수요액은 평균 55,210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군 지역의 평균(51,170백만 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기준재정수요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음성군(114,763백만 원)으로 나타난 반면, 증평군(35,028백만 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7 | 기준재정수입액 현황 : 군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은	25,166	28,244	35,815	43,115	47,465	35,961	17.19%
옥천	39,660	37,118	43,025	50,666	53,268	44,747	7.65%
영동	29,185	37,742	37,619	48,059	48,716	40,264	13.67%
진천	70,573	79,789	97,793	106,021	112,242	93,284	12.30%
괴산	30,154	33,862	36,731	45,695	46,951	38,679	11.71%
음성	91,634	112,011	117,407	125,950	126,813	114,763	8.46%
단양	31,073	32,055	37,297	48,252	46,088	38,953	10.36%
증평	26,430	33,325	38,054	37,811	39,518	35,028	10.58%
충북 평균	42,984	49,268	55,468	63,196	65,133	55,210	10.95%
군 평균 (충북 포함)	38,327	45,936	50,416	59,304	59,685	50,734	11.71%
군 평균 (충북 제외)	38,782	46,261	50,909	59,684	60,217	51,170	11.63%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② 기초수입

- 충청북도 군 지역의 기초수입은 2016년 20,084백만 원에서 2020년 28,226백만 원으로 연평균 8.88% 증가하였음
 - 기초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증평군(9.98%)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영동군(6.09%)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7.28%로 충청북도 군 지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최근 5년 간 기초수요는 평균 24,579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평균(21,897백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음성군(66,304백만 원)과 진천군(57,498백만 원)을 제외하면, 충청북도 군 지역의 평균은 나머지 군 지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충청북도 군 지역의 기초수입 규모는 다른 군 지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8 | 기초수입 현황 : 군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은	8,577	8,923	10,295	11,282	12,436	10,303	9.73%
옥천	13,455	13,932	15,882	17,519	17,551	15,668	6.87%
영동	10,510	10,779	12,028	12,843	13,315	11,895	6.09%
진천	47,136	50,727	57,186	65,145	67,296	57,498	9.31%
괴산	10,029	10,565	12,007	13,776	14,393	12,154	9.45%
음성	53,041	59,988	69,423	73,357	75,709	66,304	9.30%
단양	8,310	8,722	9,900	11,334	11,045	9,862	7.37%
증평	9,610	12,212	14,122	14,750	14,059	12,951	9.98%
충북 평균	20,084	21,981	25,105	27,501	28,226	24,579	8.88%
군 평균 (충북 포함)	18,316	19,977	21,784	23,867	24,090	21,607	7.09%
군 평균 (충북 제외)	18,488	20,172	22,108	24,222	24,494	21,897	7.28%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③ 보정수입

- 충청북도 군 지역의 보정수입은 2016년 평균 21,410백만 원에서 2020년 35,940백만 원으로 연평균 13.83% 증가하였음
 - 진천군의 연평균 증가율 19.11%로 보정수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반면, 옥천군이 7.58%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6.10%로 충청북도 군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최근 5년 간 보정수입 평균은 29,056백만 원으로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은 나머지 군 지역 평균보다 보정수입 규모는 크지만,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
- 진천군은 전국 군 평균보다 보정수입 규모가 크면서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29 | 보정수입 현황 : 군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은	18,132	18,132	25,061	30,578	32,868	24,954	16.03%
옥천	25,170	25,170	27,134	33,003	33,716	28,839	7.58%
영동	17,772	17,772	25,487	34,726	35,209	26,193	18.64%
진천	21,888	21,888	36,969	42,153	44,060	33,392	19.11%
괴산	18,798	18,798	25,090	30,596	32,738	25,204	14.88%
음성	29,296	29,296	59,220	50,927	45,597	42,867	11.69%
단양	24,096	24,096	28,665	36,627	37,996	30,296	12.06%
증평	16,131	16,131	23,377	22,535	25,337	20,702	11.95%
충북 평균	21,410	21,410	31,375	35,143	35,940	29,056	13.83%
군 평균 (충북 포함)	18,841	22,594	28,659	35,161	34,556	27,962	16.37%
군 평균 (충북 제외)	19,091	22,478	28,924	35,159	34,691	28,069	16.10%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④ 자체노력

- 충청북도 군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과 관련하여 평균 660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음성군이 평균 2,606백만 원으로 자체노력 페널티가 가장 많고, 보은군이 평균 158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단양군은 충청북도 군 지역 중에서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유일한 지역임
 -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관련 페널티 규모는 2016년 1,491백만 원에서 2020년 967백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 충청북도 소재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은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과 관련하여 최근 5년 간 667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의 기준재정수입액 관련 자체노력 페널티는 나머지 군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표 4-30 |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현황 : 군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보은	-1,543	-1,543	459	1,255	2,161	158
옥천	1,035	1,035	9	144	2,001	845
영동	903	903	104	490	192	518
진천	1,549	1,549	3,638	-1,277	886	1,269
괴산	1,327	1,327	-366	1,323	-180	686
음성	9,297	9,297	-11,236	166	5,507	2,606
단양	-1,333	-1,333	-1,268	291	-2,953	-1,319
증평	689	689	555	526	122	516
충북 평균	1,491	1,491	-1,013	365	967	660
군 평균 (충북 포함)	963	1,208	-44	284	904	663
군 평균 (충북 제외)	1,035	1,236	-138	291	910	667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재정부족액

- 충청북도 군 지역의 재정부족액은 2016년 133,620백만 원에서 2020년 193,769백만 원으로 연평균 9.74% 증가하였음
 - 2020년 기준 영동군의 재정부족액이 260,078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평군이 83,119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괴산군이 11.20%로 재정부족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보은군이 8.03%로 가장 낮음
- 최근 5년 간 충청북도 군 지역의 재정부족액 규모는 전국 군 평균보다 작은 반면,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북도 군 지역 중 전국 군 평균보다 재정부족액이 큰 지역은 영동군과 괴산군 등 2개 지역으로 나타났음

• 표 4-31 | 재정부족액 군 평균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은	151,935	169,001	184,876	210,836	206,922	184,714	8.03%
옥천	145,206	169,687	186,243	217,252	214,762	186,630	10.28%
영동	187,839	202,031	230,265	260,295	260,078	228,102	8.47%
진천	101,282	108,156	114,067	145,877	147,836	123,444	9.92%
괴산	165,610	201,405	218,613	253,922	253,212	218,552	11.20%
음성	127,299	134,422	160,495	183,807	192,081	159,621	10.83%
단양	130,979	152,854	169,924	188,948	192,145	166,970	10.05%
증평	58,808	65,041	67,274	84,988	83,119	71,846	9.04%
충북 평균	133,620	150,325	166,470	193,241	193,769	167,485	9.74%
군 평균 (충북 포함)	163,368	178,284	200,328	226,352	231,272	199,921	9.08%
군 평균 (충북 제외)	160,465	175,556	197,025	223,122	227,613	196,756	9.13%

자료 : 행정안전부(2016~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충청북도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1. 기본방향

- 이 연구는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의 보통교부세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교부액,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등 모든 항목에서 충청북도 본청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수요, 지역균형수요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충청북도 본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북도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발굴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충청북도 특성을 반영한 신규수요 및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음
 - 2021년 6월 24일에 관련 공무원(충북 예산담당관 및 시군 예산과장) 및 전문가(대학 및 연구원 3명)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충북형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음
 -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에서 제출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관련 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음
 - 이들 중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논리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음

- 한편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의 보통교부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의 경우 기준 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황분석 결과 충청북도는 최근 5년 간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에서 평균 1,402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2020년에 페널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 중 ‘행사·축제 경비 절감’과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 많은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보조금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사업 검토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기관을 통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지방보조사업의 감액 또는 폐지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표 5-1 |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관련 건의 사항 •

구분	신규수요 및 제도개선 건의 사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수요 환경보호비(폐기물, 산업단지 수요) 산정기준 변경 - 폐기물 : 10% ⇒ 15% - 산업단지 : 분양면적 ⇒ 조성면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산정 비율 조정(180→90%) • 기존 합계출산율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감소의 심각성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구 자연감소 수요 신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절감 수요자체노력 반영 항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자체 재원 금액만 인센티브 대상금액 반영 • 보조사업 지방비 과부담 보정 수요 신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수요액 산정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수요 신설, 지역균형수요 항목에 체육시설 운영관리비 항목 신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에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추가 •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작성 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존재 시 선반영 후 해당부처 협의 반영 조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수요에 인구감소지역 관련 수요반영, 보정수요액 항목에 인구 감소 지역발전수요 신설 •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증가 및 물가상승을 반영 향후 5년간 26.14%까지 단계적 상향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수입 자체노력 반영시 페널티 항목만 반영하여 실질적 재정부족액 파악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지방세 자체노력 반영지표 중 체납액 축소분야 페널티 가중, 폐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세 감액 심의시 감사처분 요구시 조치를 요하지 않은 사항 감액 심의 제외

구분	신규수요 및 제도개선 건의 사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외국인수 보정인구 반영 •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재정적 조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심의 제외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km²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군 단위 지자체 특례군 수요 반영 • 지방교부세 법정률 매년 변경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수요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가중치 상향(50→20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면적 지역균형수요 반영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지역 수요 산정 시 댐 연접지역 인구수 가중치 적용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병해충 예방 수요 신설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입액 및 보정수입액 차등산입율제도 도입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을 차등 적용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내륙도 수요 추가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 국책기관 이전지역을 지역균형수요에 추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꽃동네 등 대규모 복지시설 수요 반영

2.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1)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수요

오송보건의료타운 현황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6대 국가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임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하며 각종 인허가 임상실험, 질병연구, 인력양성, 보건 산업육성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 집적화 타운임
-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일대로부터 이전하였음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현황

- 입주기업 : 코미팜, 메디톡스, LG생명과학, SK바이오랜드, HK이노엔 등이 영업 중
- 입주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공간정보산업협회
- 주거시설 : 오송힐데스하임아파트 등 입주 및 분양
- 교육시설 : 오송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오송고등학교
- 편의시설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
- 교통시설 : 오송역 위치(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출퇴근 이동인구 많음)
- 기타 : 제2생명과학단지 추진 중이며 충북도청의 컨벤션센터(오송컨팩스) 입지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부지는 400,256㎡, 지하1층 지상6층 19개동으로 구성(연면적 136,654㎡)되어 있으며, 임직원인 2,492명임

• 표 5-2 |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기관 현황 •

구분	계	식품 의약품 안전청	식품 의약품 안전평가원	질병관리 본부	국립 보건 연구원	보건 산업 진흥원	보건복지 인력 개발원	기타 시설
연면적 (㎡)	136,654	36,896	29,665	4,523	31,533	7,633	14,667	11,737
임직원 (명)	2,492	870	440	313	415	328	126	-

• 그림 5-1 |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기관 배치도 •



국가기관입지에 따른 재정수요 및 경제적 손실 발생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6개 국가기관(청사)이 입지한 지역으로 신도시 개발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입지로 인해 해당 부지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계획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신도시개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
- 국가기관이 이전되었으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오송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부지(400,256㎡)는 국가시설로 재산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가시설 입지로 인해 충청북도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지역균형수요 반영 방법 검토 결과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6개 국가기관 입주로 해당 면적에 대해 각종 지방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면적을 지역균형수요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함
 - 지역균형수요 반영 대상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부지 400,256m²
- 지역균형수요는 기초수요로 반영할 수 없는 지역의 자연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재정수요 또는 수입손실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재정수요로 반영하는 것임
 - 청주시의 오송의료행정타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국가기관의 입지로 경제적 손실(재산세 비과세)이 발생함
 - 오송의료행정타운의 입지는 비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개발비-지역관리비-지역개발규제지역 수요 등에 포함하여 지역균형수요로 보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수요의 ‘지역경제비-지역관리비 수요’로 반영
 - 1안 : 현행 지역관리비-지역개발 규제지역 수요 보정 방식(개선)

지역개발 규제지역 수요 산정공식(현행)

- 개발제한구역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 1천m²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징수액 × 20%
 - ※ 개발제한구역 수요산정액은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모두 반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 2022년 산정분까지만 산정한다.

- 청주시의 오송의료행정타운은 국가기관의 부지는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규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부지 면적을 ‘지역개발 규제지역 수요’에 ‘국가기관 시설구역’을 포함하여 수요보정을 할 필요가 있음

지역개발 규제지역 수요 산정공식(개선)

-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가기관 시설구역 × 1천㎡당 토지분 재산제 평균징수액 × 20%
- ※ 개발제한구역, 국가시설구역 수요산정액은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모두 반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 2022년 산정분까지만 산정한다.

- 2안 : 지역관리비 내에 ‘국가기관 시설구역 수요’ 보정 방식(신설)

국가기관 시설구역 수요 산정공식

- (국가기관 시설구역 면적 × 동종지방자치단체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 × 20%
- ※ 국가기관 시설구역 부지 면적은 공공청사의 건축물이 포함된 부지의 전체 면적이다.
- ※ 국가기관 시설구역 면적 수요산정액이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3안 : 지역관리비 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수요’ 보정 방식

-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선택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가는 규제 특례 혜택만 부여함
 -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유형은 의료·복지,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향토자원·유통·물류 등으로 전국에 200여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충북 혹은 청주시가 주체가 되어 운영할 경우 특구지정은 가능하나 오송의료행정타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참고사항
 - 국가기관 시설구역의 부지면적을 지역균형 수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사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 노력이 필요함

2)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요

옥천군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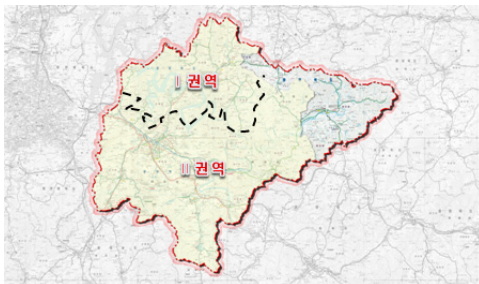
- 옥천군은 군 전체면적 537.17km² 중 450.42km²(83.9%)가 규제지역임
 - 옥천군은 대청호 수질 보호 등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으로 개발 여건이 매우 열악함
 -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9%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임

• 표 5-3 | 옥천군 규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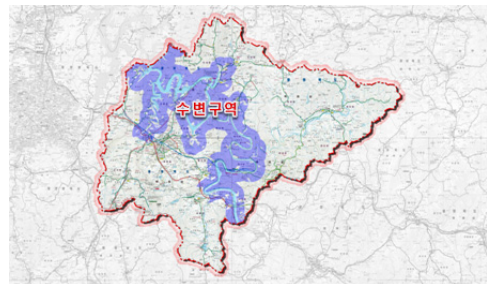
(단위 : km²)

총규제 면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 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계	I 권역	II 권역					
450.42 (83.9%)	449.82 (83.7%)	135.92 (25.3%)	313.90 (58.4)	128.36 (23.9%)	120.77 (22.5%)	29.11 (5.4%)	10.4 (1.9%)	1.7 (0.3%)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현황



수변구역 현황



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



개발제한구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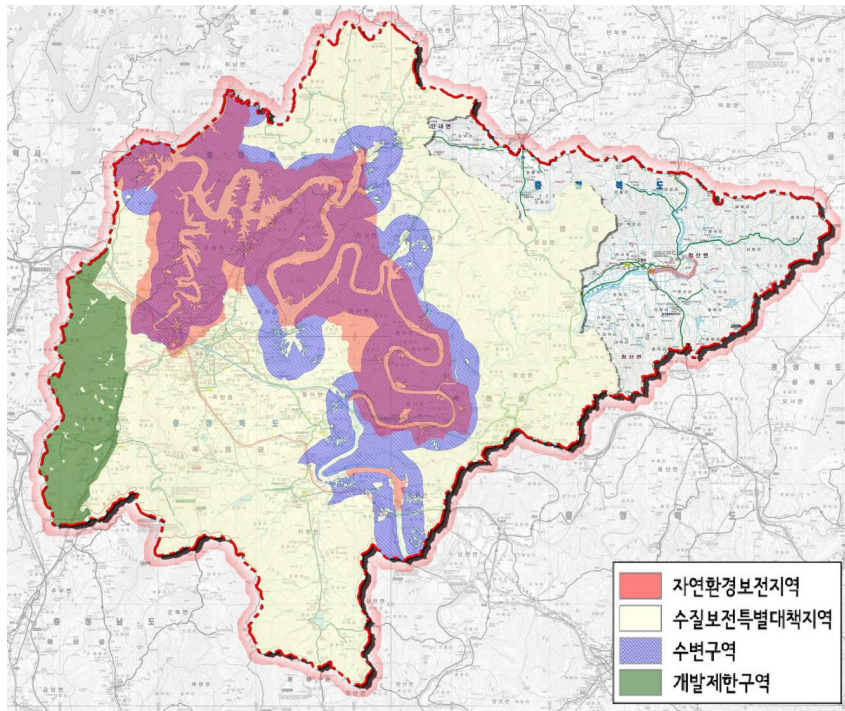


- 옥천군 중복규제 지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표 5-4 | 옥천군 중복규제 현황 •

(단위 : km²)

군 면적	특별대책	특별대책, 수변구역	특별대책, 자연환경보전	특별대책,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
537.17	449.82 (83.7%)	128.31 (23.9%)	120.77 (22.5%)	29.08 (5.4%)	90.35 (16.8%)



- 옥천군의 중복규제 관련 연혁은 다음과 같음
 - 1981년 6월 : 대청댐 준공
 - 1990년 7월 19일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안남면, 안내면, 군북면 I권역/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 II권역)
 - 2002년 9월 18일 : 수변구역 지정 고시(댐과 금강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 5-5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 •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금강본류에서 1km 이내구역)
		I 권역 안내(오덕 제외), 안남, 군북(이백, 자모, 증약 제외)	II 권역 옥천, 군서, 이원, 동이, 청성(능월, 도장제외), 군북(이백, 자모, 증약 포함)	
숙박업	입지불허	• 연면적 400㎡ 이상 입지 불허 (하수처리구역 입지가능 /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 입지제한 미적용)	-	입지 불허
식품 접객업 (식당)	입지불허 (하수도정비지역 제한적 허용)	• 연면적 400㎡ 이상 입지 불허 (하수처리구역 입지가능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 입지제한 미적용)	-	입지 불허
기타오수 배출시설	100㎡ 이하 주택, 영농시설, 공공시설 제한적 허용	• 연면적 800㎡ 이상 입지 불허 (하수처리구역 입지가능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 입지제한 미적용) • 공공복리시설입지가능	-	공동주택 입지 불허 (BOD, SS 10ppm 이하 처리)
폐수배출 시설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도시지역내사전시설 등 전량위탁 입지가능) •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도로, 터널건설 시 임시 시설은 가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도시지역내사전시설 등 전량위탁은 가능) • 200㎡/일 이상 폐수배출 시설로 BOD 30mg/L 이하 처리방류하거나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	입지 불허
공장	입지불허	-	-	입지 불허 (증축 포함)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불허	• 허가대상 입지불허(우사 : 450㎡ 이상, 돈사 : 500㎡ 이상)	-	입지 불허
폐기물 처리시설	-	•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처리업 입지 불허	•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처리업 입지불허	-
용도변경, 증축, 개축	-	•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공공복리 시설이 아닌 건축물로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 허용	-	-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I 권역		수변구역 (금강본류에서 1km 이내구역)
		안내(오덕 제외), 안남, 군북(이백, 자모, 증약 제외)	II 권역 옥천, 군서, 이원, 동이, 청성(능월, 도장제외), 군북(이백, 자모, 증약 포함)	
내수면 어업	입지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면 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의 어업 신규면허 허가 및 신고(증설포함) 불허, 제6조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면 어업법 제6조의 양식 어업 신규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
유·도선 사업	무동력선 행위가능(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증설 포함) 신규면허·신고 및 등록 불허 	-	-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	입지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장입지는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름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의 골프연습장 신규입지 및 증설 입지 불허(단순퍼팅연습시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장입지는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름 골프장 입지가능, 단 천연 잔디 골프연습장은 저감시설 설치조건으로 입지가능 	-
광물채굴 및 채석	입지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물채굴 및 석재 굴취·채취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물채굴 및 석재 굴취·채취 불허 	-
집단묘지	입지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신규입지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신규입지 불허 	-

중복규제로 인한 옥천군의 영향

-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9%가 수질보전특별대책이면서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음
-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및 행위 제한으로 개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고 있음
- 한편 옥천군은 수질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산지출과 인력 충당을 하고 있음

옥천군 수질관리 관련 인력 및 예산 현황

《2021년 예산》

- 환경기초시설 운영(수초재배설) : 18,500천 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인공습지) : 12,000천 원
-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사업 : 37,000천 원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 132,591천 원

《담당인력과 인건비》

- 수질토양오염방지(12명) : 341,266천 원
 - 토양오염 관리 : 2명
 - 수질오염 검사 및 관리 : 2명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 2명
 - 청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명
 - 청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 보수 및 폐기물 처리 등 : 4명
- 상수원관리 지역관리(52명) : 843,000천 원
 - 하천변쓰레기 수거 : 21명
 - 가축분뇨수거 사업 : 10명
 - 부유쓰레기 운반 처리비 : 5명
 - 부착조류제거사업 : 10명
- 녹조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11명) : 500,000천 원
 - 녹조방지시설 환경정비 : 7명
 - 생태습지 등 정비 : 4명
- 오염총량 관리사업(8명) : 124,544천 원
 - 이행평가 : 3명, 모니터링 : 5명
- 생태하천복원사업(5명) : 3,630,000천 원
 - 수자원공사위탁(관련부서) : 5명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7명) : 21,980,533천 원

대청호·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현황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I 권역	특별대책지역 II 권역
대전광역시 1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주촌동 	
충청북도 1시 2군 11개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문의면 [남계리, 등동리 일부(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역] • 보은군: 회남면, 회인면(갈티리를 제외한 전역) • 옥천군: 안남면, 안내면(오덕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악리를 제외한 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군: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악리)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I 권역	특별대책지역 II 권역
경기도 5시 2군 61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 여주시: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서면, 대신면, 산북면 •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 가평군: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 용인시: 모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 여주시: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 • 가평군: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화곡리, 천안2리, 이천리), 청평면(호명리, 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 양평군: 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단월면(항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평면(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 용인시: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양지면, 포곡읍 •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가짜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신갈리)

지역균형수요 반영 방법 검토 결과

- 옥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83.9%가 규제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120.77km²(22.5%), 수변구역 128.36km²(23.9%), 수원보호구역 1.7km²(0.3%)은 지역균형수요의 ‘환경보호비-환경보호관련 규제지역 수요’로 반영되고 있음
 -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지역경제비-지역관리비-지역개발 규제지역 수요’로 보정되고 있음
- 하지만, 옥천군은 위 규제지역 외에도 유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449.82km²로 군 전체 면적의 83.7%에 이르고 있음
 - 옥천군의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중복지역을 제외하고도 159.34km²(전체 규제 지역의 35.5%)에 이르러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나큰 제약을 받고 있으나, ‘특별대책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고 있지 않음
-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규제지역’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여 규제로 인한 개발 행위 제한 및 경제적·재정적 손실을 보정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환경비-환경보호비-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의 규제지역으로 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음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 개선

-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면적 × 1천㎡당 통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 (현행) 규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한다.
 - ※ (개선) 규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 ※ 2022년 산정분까지만 산정한다.

3) 기타

석회석 광산 및 생산시설 관리 수요

- 석회석 광산 및 생산시설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석회석광산 허가면적 : 7,379천m²
 - 석회석 광산 중 폐광지역 면적 : 4,425m²
 - 석회석 생산시설 면적 : 397천m²
 - 석회석 생산회사 : 시멘트회사 17개
 - 시멘트 공장 입지 : 매포읍에 공장이 대부분 위치
 - 매포읍 인구 : 5,318명(2021.7월 말)

- 석회석 광산 및 생산시설로 인한 피해는 다음과 같음
 - 단양군의 경우 1967년부터 시멘트공장이 들어서면서 50년 이상 채굴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석회석 폐광이 발생하고 있음
 - 단양군 매포읍 등의 석회석 광산지역 소재 지역은 산림훼손 및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피해 및 주민생활 피해화 등이 지속됨
 - 석탄 폐광 지역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호받는 폐광지역에 비해 보상수준이 적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단양군은 시멘트 관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총 9건(27,46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표 5-6 | 시멘트 관련업 과태료(배출허용기준 초과) 처분 현황 •

구분	건수	총 처분액
2016년	2건	960천 원
2017년	1건	500천 원
2018년	1건	2,000천 원
2019년	3건	20,000천 원
2020년	2건	4,000천 원
합계	9건	27,460천 원

-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과 관련된 단양군의 재정수요는 다음과 같음
 -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가동에 따른 피해지역의 지역개발비는 2016년 2,521백만 원에서 2020년 4,301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지출한 지역개발비 중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가동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업만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는 개별 사업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가동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단양군의 지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관련 차량 이동 등에 따른 군도 등 도로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이나, 광산촌인 매포읍의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보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 인적 피해인 진폐증에 관한 예산은 국비지출 항목임

• 표 5-7 |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가동에 따른 피해지역의 지역개발비 현황 •

연도	사업수	예산액
2016년	81건	2,521백만 원
2017년	150건	5,685백만 원
2018년	145건	3,695백만 원
2019년	152건	5,958백만 원
2020년	317건	4,301백만 원
합계	845건	22,160백만 원

-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관리 수요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석회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인적, 농작물 등), 지역개발 제한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 필요함
 - 단양군은 석회광산 입지로 인한 경제행위 제한으로 경제적·재정적 손실이 발생해야 함
 -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방지, 차량 이동으로 인한 도로유지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지역균형수요에 반영 여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석탄 폐광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시멘트 광산 및 기타 광산은 관련 지원 법률이 없는 것도 한계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관리 수요

- 현황
 - 진천군, 음성군 혁신도시는 산업용지 565천㎡(8.2%) 계획되어 있음
- 지역균형수요의 ‘환경보호비-산업단지 수요’ 요건
 - 현재 산업단지와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는 분양면적을 산업단지 수요로 반영하고 있음
 - 환경보호비로 반영하는 것은 산업단지에 공장과 기업 등이 입지하여 가동될 경우 쓰레기처리 등 환경보호의 재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임
- 검토결과
 - 진천군과 음성군의 혁신도시의 계획 평면도에 산업용지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으로는 미흡함
 - 산업용지가 분양되어 공장입지 및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환경보호비-산업단지 수요’ 요건에 해당함

- 또한 혁신도시는 중앙정부가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어 주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재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수요의 반영이 필요함

생활형 집단사회복지시설(음성꽃동네) 수요

• 현황

- 음성꽃동네의 경우 입소자 80%가 타 시·도민인 전국단위 시설이며,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 직영사회복지시설은 기초수요의 보건사회복지비,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균형 수요에 반영되고 있지만, 민간운영 사회복지시설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방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생활형 집단거주시설 수요 일몰

- 정부는 보통교부세 운영을 기초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정수요(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 수요)에 대하여 일몰 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보정수요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보정수요 일몰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새로운 보정수요 반영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어 필요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별로 일몰제를 운영함
- 생활형 집단거주시설의 경우 입소인원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보건사회복지비로 반영되고 있었으나 2019년 산정분까지만 운영되고 2020년도에 일몰되었음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음성꽃동네와 같이 대규모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대도시 외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입지하고 있음

※ 노숙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시설은 기피시설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음성꽃동네의 경우 가평꽃동네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반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균형수요에 재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내수면 관리 수요

- 현황
 - 내수면이란 모든 수면 중 바다를 제외한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3조는 ‘하천·댐·호수·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내수면해양과학용어사전에서는 하천·댐·호소(湖沼)·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수면 관리(충북 2021년 예산지출)
 -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14,000천 원
 - 내수면 어도 개보수 125,000천 원
 -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 6,000천 원
- 비교 검토
 - 현재 어장 및 갯벌면적은 기초수요의 입수산비 산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하천의 경우 기초수요의 지역관리비에 하천 길이로 반영되며, 해안선 길이나 댐 면적은 지역균형 수요 환경보호비로 반영되고 있음
 - 내수면의 면적은 하천길이, 댐 등으로 간접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고 있음
 - 한편, 갯벌은 보존 가치, 홍수 시의 각종 쓰레기 청소 비용 부담 등으로 기초수요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수면이 기초수요 및 지역균형수요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내수면의 보존 및 이용 가치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4) 종합

- 오송보건의료타운, 상수원 수질보전별대책지역,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생활형 집단생활시설(음성꽃동네), 내수면 등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지역균형 수요의 반영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오송보건의료타운과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적·재정적 손실 및 특수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역균형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는 주민피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지역균형수요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음성꽃동네(생활형 집단생활시설)는 그동안 사회복지균형 수요에 반영되다가 2020년에 일몰되어 중장기적으로 계속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내수면 관리는 지역균형수요 반영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지역균형수요의 댐지역 수요 산정 시에 연접지역 인구 가중치 부여나 식수원 인구 수 가중치 부여, 그리고 인구 감소단체 보정 방법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2011-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행정안전부(2016-2020). 주민등록인구통계.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 행정안전부(2020). 2020 지방세외수입 통계연보.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https://lofin.mois.go.kr/>).
-